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7

대 전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13767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구합284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20.
판 결 선 고	2018. 8.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91,761,600원, 지방교육세 159,176,16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7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창영

판사 기우종

판사 이흥주